



보도 일시	2022. 11. 24.(목) (배포 후 즉시)	배포 일시	2022. 11. 24.(목)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 정명규 (044-201-6390)
		담당자	사무관 신승철 (044-201-6399)

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
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

- ☐ (동물원수족관법)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(현 등록제), 전시동물 복지 제고 등
- ☐ (야생생물법) 동물원·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,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 신설 및 백색목록 지정 등 수입·유통 관리 강화
- ☐ (신고수리 3개 법률*)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적극 행정 유도

*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토양환경보전법, 자연공원법

- ☐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'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'(이하 동물원수족관법), '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'(이하 야생생물법) 등 5개 환경법안*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* 나머지 3개 법률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토양환경보전법, 자연공원법

-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, 길게는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된다.

- ☐ 먼저, '동물원수족관법'에서는 동물원·수족관을 △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, △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.
- 그간 동물원·수족관은 등록 규모*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어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,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.

- * [동물원]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(가축만 전시하는 시설은 제외)
- [수족관] 해양·담수생물을 용량이 300m³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수조에 전시

<동물원·수족관 허가제 전환>

- 이에 동물원·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△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, △전문인력, △보유동물의 질병·안전관리 계획, △휴·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.

- * 기존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에(2028년 12월까지) 개정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

-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.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.

<전시동물 복지 제고>

-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풍부화, 수의학적 훈련(공정강화 훈련) 등과 연계*하여 국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

-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**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. 이에 하위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.

- * 동물의 건강검진에 필요하여 입을 벌리거나 팔을 내미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먹이 등 긍정적 보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며 설명

- ** 단일 먹이를 제한 없이 급여하여 전시동물에게 대사장애, 영양불균형 등 건강 피해를 야기하고,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장기간 굶기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

- 또한, 동물원·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.

- 하위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개체('22.11월 기준)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전시용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.

- '야생생물법'에서는 △동물원·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, △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했다.

<동물원·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>

- 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. 다만,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,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

- 동물원·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5년간(2027년 12월까지)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.

<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>

- 현행 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의 수입(반입)·수출(반출)·유통 전(全) 과정에 대한 관리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

- 지금까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, 유입주의 생물, 생태계교란 생물 등과 같은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*이 다수 있어 인수공통감염병 유입, 하이에나와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개인이 수입하여 반입하는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이 부재한 문제가 있었다.

* 야생동물(포유류·조류·파충류·양서류) 32,880종 중 현행 법상 관리체계가 있는 야생동물은 총 13,210종이며, 19,670종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
-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'지정관리 야생동물'로 새롭게 정의했다.

-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내 수입·유통이 가능한 종(백색목록*)을 지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·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.

* 질병·생태계위해 우려가 낮은 종만 수입·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특성을 가지며,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 도입 증가추세, 환경부령에서 규정할 예정

- 또한, 야생동물 유통(양도·양수·보관·폐사)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신설하고, 야생동물 대상 영업*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 및 영업자 준수 의무** 사항을 도입하여 국내로 수입·반입되어 유통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·감독 능력을 강화하며 야생동물 유기 문제 등으로부터 생태계·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
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수입·생산·판매·위탁관리업

** 보건관리, 판매기록 작성·보관, 야생동물 보호·위생 교육 이수, 관리책임자 선임 등

- 그 밖에 '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', '토양환경보전법', '자연공원법' 등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,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- '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은 지자체장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받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이 협의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.

- 또한, '토양환경보전법'은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.

- '자연공원법'은 자연공원내 행위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. 또한,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고, 처리기한내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.
-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'동물원수족관법'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. 끝.

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1	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(전부개정)	○ 동물원·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 * 기존법에 따라 既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에('28년 12월까지) 개정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○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검사관제 도입 ○ 부적절한 체험행위 금지 ○ 전시로 인해 폐사 또는 질병 발생이 높은 종 신규 전시 금지 ○ 동물원·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 교육 신설 ○ 휴·폐원 관리 강화	○ 동물원·수족관 내 보유동물 서식 환경 개선, 안전·질병관리 강화 ○ 동물원·수족관 관련 전문가가 허가 사항 점검 등을 통해 허가제 전환 이행력 확보 ○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으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, 동물 건강피해 등 예방 ○ 하위법령(대통령령)으로 고래류 규 정시 동물원·수족관은 고래류를 신규 보유할 수 없음 ○ 동물원·수족관 근무자 전문성 향상,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제고 가능 ○ 동물원·수족관 휴·폐원시 보유 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	공포 후 1년	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(7245) 조웅찬 사무관(7244)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2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	○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* 기존 전시시설은 최대 5년간 유예	○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 해소	공포 후 1년	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(7245) 조웅찬 사무관(7244)
		○ 지정관리 야생동물 및 수입·유통 가능종(백색목록) 제도 도입 * 백색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기존 소유자는 폐사할 때까지 보관 가능 ○ 야생동물 유통(양도·양수·보관·폐사) 신고제 신설 ○ 야생동물 대상 영업 허가제 신설	○ 기존 야생동물 수입·반입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,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 국민안전 제고 ○ 기존 야생동물 유통 관리제도 미비점 보완·강화,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추적관리 통해 유기 문제 등 예방 ○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 의무사항 부과를 통해 보건·안전성 제고	공포 후 3년	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(7245) 김세현 사무관(7243)
3	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	○ 지자체장이 빗물이용시설·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받고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○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이 협의기간 내(30일)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	○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행태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유도 하여 국민 편의 제고	공포 후 1개월	생활하수과 한준욱 과장(7020) 강추향 사무관(7023)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4	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	○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 통지 의무 명시 및 신고수리 간주 규정 도입	○ 행정청의 수리 여부 통지 의무를 명시하여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, 신고 수리 간주를 통해 행정청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개선	공포 후 1개월	토양지하수과 이정용 과장(7170) 송진성 사무관(7177)
5	자연공원법 (일부개정)	○ 자연공원내 행위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 ○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시 기한내 허가여부 또는 자연사유 미통지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	○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○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 유도	공포 후 1개월 공포 후 1개월	자연공원과 배연진 과장(7316) 황의정 사무관(7326)